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도입 >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3838호)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도입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10.
3. 회 부 일 : 2024.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단순 채무와 달리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심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상당히 많음.

이에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의 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였으나, 이조차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함으로써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이로 인해 양육을 홀로 책임지는 부 또는 모에게 큰 부담이 되어 동 제재를 활용하기 쉽지 않은 실정임.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

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한정적이고 지원기간도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대지급 금액을 추후 징수하도록 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비용이 적시에 지급되도록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고,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미

성년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라. 양육비 대지급의 지원기준은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마.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 대지급 지원기준, 양육비 대지급 여부 및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바.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양육비 대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가 대지급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9조).

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면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지된 양육비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거나 양육비 대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급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11조).

Ⅲ. 검토의견

1.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도입

제정안은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조문 체계>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양육비의 지급 의무
제5조	양육비 대지급 신청
제6조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
제7조	양육비 대지급 결정 및 통지
제8조	양육비 대지급 실시 및 이의신청
제9조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징수
제10조	양육비 대지급의 중지 등
제11조	대지급된 양육비 등의 반환
제12조	권리의 보호
제13조	벌칙
제14조	과태료

법원의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지급 요건이 제한적인 등 현행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한부모가족 아동빈곤율은 47.7%로 높은 상황(OECD 평균 31.9%)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하여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도입은 필요함.

다만, 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양육비를 미리 일부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¹⁾이 2024. 10. 16. 개정되어 2025. 7. 1.부터 시행될 예정임.

즉, 제정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²⁾은 지난 법 개정에서 이미 대부분 반영되어 곧 시행예정이므로, 추가적인 개정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 경과를 살펴본 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63호)

2)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해주는 제도의 도입, 양육비 대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가 대지급한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양육비 채무 이행 시 대지급 중지, 거짓이나 부정하게 대지급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및 반환 등

< 장경태의원안과 시행예정법률간 비교 >

구분	장경태의원안	시행예정법률
용어	대지급	선지급
신청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지원기준	• 제6조에 따른 양육비대지급 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15일 이내 결정	• 신청대상은 법에 명시,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30일 이내 결정(30일 연장 가능)

<시행예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양육비 선지급 제도 관련 규정>

주요 관련 규정	비 고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회 심의사항에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추가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에 양육비 선지급 추가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재산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제17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제21조의12(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21조의13(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1조의14(압류금지)	
제21조의15(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 시행 이후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을 지켜보며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에 대하여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는 취지에서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이행심의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